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345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345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나642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76280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1. 11. 25.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나642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구「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별지